

# 『에너지사용제한조치』 점검 방법

## 1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

### 1] 제한공고 내용

#### ○ 제한대상 :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

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, 상점, 점포, 상가, 건물 등의 사업장

[관련법령]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

제8조(사업자등록)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#### ○ 제한내용 :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

\* 문 열고 냉방 영업 :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

####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

[해설]

-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출입문 개폐 전원을 차단하여 문을 열어놓고 5분 이상 영업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
-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이 아님. 따라서 물건하역 등 불가피하게 장시간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함

####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

[해설]

- 미닫이/여닫이/폴딩 등의 수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고정힌지(hinge), 출입문 고정 받침대를 설치하거나, 물건을 놓아 문을 5분이상 열어놓은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
-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이 아님. 따라서 물건하역 등 불가피하게 장시간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함

####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

[해설]

- 출입문 :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
-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

####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및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

[해설]

- 외기를 차단 할 수 없는 출입문(자바라 등) 또는 비닐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

####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

[해설]

- 기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

#### ○ 제외대상

##### ①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

- \* 냉방기 :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, 개별 냉방장치(전기 냉방기, 전기 냉난방기, 각종 히트펌프류)를 모두 포함. 다만,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음

②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 
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

[해설]  
 ○ 지상으로 통하는 공동 출입문이 있는 사업장으로 공동 출입문을 닫은 경우에 개별 사업장은 제한대상이 아님  
 ○ 단,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공동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은 문 열고 냉방 영업에 해당됨. 따라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해야 함

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 
따른 지하도 상가

[해설]  
 ○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는 제한대상이 아님  
 [관련법령]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
 (생략)  
 4. "지하도상가"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난 구역을 말한다.  
 (생략)

④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

[해설]  
 ○ 문 열고 냉방 영업 점검 주체인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됨

② 점검방법

- 문 열고 냉방 영업 여부 점검은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

<점검 순서>



<참고자료>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사례



<냉방기를 가동하면서 5분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규정위반>



<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면 규정위반>



<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면 규정위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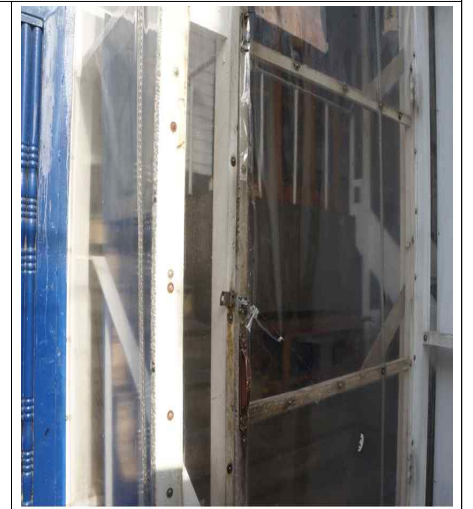


<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면 규정위반>  
\* 외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규정위반이 아님

<비닐막 설치 사례별 위반여부(예시)>



<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외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비닐막을 설치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규정위반>



<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외기 차단 방식이 일반출입문과 동일한 경우 규정준수>

## 2 과태료 부과기준

-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(300만원 이하) 부과
  - 관련근거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
  - \* 과태료 부과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[별표5] 참조

### [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]

#### 제78조(과태료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1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,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.
1.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

### [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3조]

- 제5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,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
#### <과태료(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5)>

위반행위	근거 법령	과태료 금액	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 위반
1.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나.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78조제4항제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## 3 문의사항 연락처

- 주요 문의사항 또는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담당부서	전화번호
에너지관리공단	건물수송에너지실	031-260-4412~3

[별첨 1]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점검표

점검일시	20 . . . ( : )	분류번호	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	--

**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점검표**

업 체 명			대 표 자	(인)
업 종			대표전화	
소 재 지				
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	부 서		직 위	
	전 화		성 명	(인)
점검자	소 속		성 명	(인)
	소 속		성 명	(인)

<b>외기온도</b>	
<b>냉방기기 운전여부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운전

점검항목	해당여부	비고
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		
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		
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		
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		
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		

\* 냉방기기를 운전하고 있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작성할 필요 없음

출입문 개방 위반 촬영

점검시작 시점 촬영	점검완료 시점 촬영

\*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출입문 개방여부를 점검